

의안번호	제161호
------	-------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0. 11. 16.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인 안 번호	제161호
--------------	-------

제출연월일 : 2020. 11.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변경안 가결, 2018년 10월 30일)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건 6건 중 1건 변경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비고
1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2	탑정호 수변테크 둘레길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3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4	충청유교문화원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5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변경 대상
6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사업별개요참조					

○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해 당 없 음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²,천원)

구 분	사업명	당 초				변 경				비 고
		면적			추정가격	면적			추정가격	
		토 지	건 물	기 타		토 지	건 물	기 타		
		135,160	24,591	6,369	60,435,210	142,780	16,788	6,369	55,668,123	
취 득	탐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0	0	1,000	2,500,000	0	0	1,000	2,500,000	
	탐정호 수변테크 둘레길 조성사업	0	0	5,369	3,833,000	0	0	5,369	3,833,000	
	떨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0	6,310	0	3,205,000	0	6,310	0	3,205,000	
	충청유교문화원 조성사업	92,861	4,620	0	28,760,676	92,861	4,620	0	28,760,676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38,510	10,645	0	18,486,534	46,130	2,842		13,719,447	변경 대상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3,789	3,016	0	3,650,000	3,789	3,016	0	3,650,000	
처 분	0건									

4. 사업별 개요

⑤ 산노리 자연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변경

■ 취득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탐정호의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콘텐츠를 융합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 용도 : 전시·창작·체험·숙박시설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취득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 17-1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제안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소요예산 : 18,675,000천원(국비 36%, 지방비 64%)

(단위:m²,천원)

총사업비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비고
18,675,000	5,230,000	12,050,000	1,200,000	195,000	-	-

○ 사업규모 : 건물 8동(연면적 2,842m²), 주차장, 공원 조성 등

○ 주요시설 : 아트센터(전시·체험), 아트스튜디오(창작·숙박), 오차드 및 뷰 하우스(숙박), 갤러리카페(편의) 등

■ 변경 취득재산 대상내역 : 토지

┌ 당초 : 산노리 산15번지 등 16필지(38,510m²)

└ 변경 : 산노리 산15번지 등 20필지(46,130m²)

(단위:m²,천원)

연번	당 초				변 경				비고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소재지	지번	면적		소재지	지번	면적		
계	16필지		38,510	3,404,534	20필지		46,130	4,079,447	

1	산노리	산15	1,474	113,007	산노리	산15	1,474	113,007	
2	산노리	산15-1	2,295	175,950	산노리	산15-1	2,295	175,950	
3	산노리	산16	5,455	418,218	산노리	산16	5,455	418,218	
4	병암리	566-2	4,430	379,504	병암리	566-2	4,430	379,504	
5	병암리	566-3	5,245	480,793	병암리	566-3	5,245	480,793	
6	병암리	566-4	1,927	159,299	병암리	566-4	1,927	159,299	
7	병암리	566-5	585	127,920	병암리	566-5	585	127,920	
8	병암리	산6-2	708	55,932	병암리	산6-2	708	55,932	
9	병암리	336-1	2,800	231,467	병암리	336-1	2,800	231,467	
10	병암리	336-3	1,830	183,000	병암리	336-3	1,830	183,000	
11	병암리	산6-5	3,778	341,278	병암리	산6-5	3,778	341,278	
12	병암리	산6-8	2,172	196,203	병암리	산6-8	2,172	196,203	
13	병암리	산7	893	132,759	병암리	산7	893	132,759	
14	병암리	산8-2	2,234	177,976	병암리	산8-2	2,234	177,976	
15	병암리	333	1,385	118,648	병암리	333	1,385	118,648	
16	병암리	334-2	1,299	112,580	병암리	334-2	1,299	112,580	
17					병암리	183-1	248	72,168	추가 매입
18					병암리	산8-4	4,906	397,386	추가 매입
19					병암리	산8-1	595	48,195	추가 매입
20					병암리	323-1	1,871	157,164	추가 매입

■ 변경 취득재산 대상내역 : 건물

┌ 당초 : 22동(연면적 10,645㎡)

└ 변경 : 8동(연면적 2,842㎡)

(단위:㎡,천원)

연 번	당 초				변 경				비고
	재 산 표 시		용도	사업비	재 산 표 시		용도	사업비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계		10,645		15,082,000	가야곡 산노리 산17-1 외 7필지	2,842		9,640,000	
1		1,400	황토 체험 (15동)	1,628,000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	1,671	전시 체험	5,400,000	아트센터 (1동) 지상2층
2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	3,465	예술촌 (1동)	4,543,000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외 2필지	218	숙박	700,000	오차드하우스 (4동) 지상1층
3		3,060	공방 (1동)	3,525,000	가야곡면 병암리 산8-2외 1필지	614	숙박	2,400,000	뷰하우스 (1동) 지상2층
4	가야곡면 병암리 566-5	320	지원 센터 (4동)	1,036,000	가야곡면 병암리 466-5	217	창작 숙박	540,000	아트스튜디오 (1동) 지상3층
5	가야곡면 병암리 산6-5	2,400	창작관 (1동)	4,350,000	가야곡면 병암리 산6-5	122	편의	600,000	갤러리카페 (1동) 지상1층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8. 7.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9. 5. :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사업계획 변경 승인(문체부)
- '19. 6.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道)
- '19. 12. : 사업부지내 분묘 및 연고자 조사용역 완료(분묘 215기)
- '20. 5. : 조사설계용역 착수
- '21. 11. : 조사설계용역 완료
- '22. 3. : 공사 착공
- '24. 12. : 공사 준공

□ 위치도



□ 조감도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